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취소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 취소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6.24. ~ 2026. 7.22. (20일간)
- 공고내용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취소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농지법」 제3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고대상

연 번	농지 전용자 인적사항		대상농지				반송사유
	주소	성명	읍·면	리	지번	면적(㎡)	
1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17-3, ***-***	고**	파주읍	백석리	170번지 외 5필지	9,865	기타

5. 기타사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농지법 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 및 징수됩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허가1과 농림허가1팀(☎031-940-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파 주 시

